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 4월 25일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4월 15일, 고성미 의원
- 나. 회부일자 : 2024년 4월 15일
- 다. 상정일자 : 제24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4년 4월 25일)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정 내 폭력·학대·방임·가정해체 등의 문제로 가정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 2)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3)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4조)
- 4) 가정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5) 가정 밖 청소년 지원사업과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안 제8조)
- 6) 청소년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7) 통합지원체계의 활용을 규정함(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 : 전문위원 추병수

나. 검토의견

1) 제정 이유

- 본 조례안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가정 밖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으며 총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2) 주요 내용

가)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용어를 적용하고 조례 정의를 규정함

- 2017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출 청소년들이 비행 청소년이나 예비범죄자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여가부에 ‘가출’이라는 표현을 ‘가정 밖’으로 변경을 권고함.
- 이에 따라 용어를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지역 4년만에 여가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2021.3.23.)에 따라 ‘가출 청소년’이 ‘가정 밖 청소년’으로 법률 용어를 변경함

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필요한 지원 및 예산 확보를 위한 구청장 책무를 규정함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4조)

라) 가정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마) 가정 밖 청소년 지원사업과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안 제8조)

-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상담,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 보호 및 생활 지원, 직업훈련 등의 지원을 규정함

바) 청소년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설치 운영의 근거를 규정함

사) 통합지원체계의 활용을 규정함(안 제11조)

○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을 규정함

3) 검토 의견

○ 최근 급격한 사회적 변화로 인해 청소년의 성장 환경 또한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가정과 사회가 청소년의 성장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가정과 학교를 벗어난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와 안전망의 책임은 국가와 사회에 있으며, 이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한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 보며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본 제정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개정(2024. 4. 25. 시행)으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 등 필요한 조치가 강화되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